

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명

-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국민의힘 송경택 의원입니다.
- 「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공공도서관에서는 해마다 상당한 양의 도서가 제작·폐기되고 있으나, 현행 제도상 재활용이나 기증 근거가 미비하여 대부분 폐지로 매각되고 있으며, 서울도서관 또한 지난 5년간 46,800 여권의 일반 도서와 간행물을 폐기하였습니다.
-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작·폐기 도서의 재 활용 근거를 조례에 명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.

- 이에 따라 서울도서관장이 보관 상태가 양호한 폐기 도서를 기관이나 시민에게 기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, 지식 자원의 선순환과 독서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- 본 조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안 제21조제6항 신설을 통해 서울도서관장이 폐기 대상 도서나 그 밖의 기증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기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 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개정안 취지를 살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 - 감사합니다.